

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(안)

의안 번호	8-10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환경컨설팅 사업 명시, 문구 수정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인사·조직 지침
임원의 선임방법, 결격사유 등 반영
- 재단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원 임기 일부 개정

□ 주요내용

- 정관 사업 범위 확대(안 제4조)
 - 환경컨설팅 사업 명시, 문구 수정
 - ▶ 7.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⇒ “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”
 - ▶ 12. 환경컨설팅(환경관련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사업)에 관한 사항
- 임원의 선임방법 변경(안 제7조)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임원의 선임방법),
해당 인사·조직 지침 반영
-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(안 제8조)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임원의 결격사유) 반영
- 임원의 임기 변경(안 제9조)

□ 개정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

관련사업계획서 : 붙임4

- 안산환경재단 사업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컨설팅기관 등록 추진 계획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5

- 현행 안산환경재단 정관

안산환경재단 정관 개정 결재문서 : 붙임6

- 2019년 제1차 이사회 개최 결과

향후 계획

- 이사회 의결 → 시의회 동의 → 시장의 승인 → 경기도 허가 승인 요청

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안

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사업) 조문 7호, 1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신설한다.

“목적사업을 행한다.” 를 “목적사업을 수행한다.”로 하고,

7. “환경 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” 을 “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”으로 하고,

“12. 환경컨설팅(환경관련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사업)에 관한 사항” 을 신설한다.

제7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③항 중 “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” 를 “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”로 하고, “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”를 추가한다.

⑥항 중 “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” 를 “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”로 하고, “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”를 추가한다.
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중 “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을 준용한다.”를 추가하고, ①항의

1. “미성년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하고

2.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”으로 하고

3. “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”를 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으로 하고

4. “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를 “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”으로 하고,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

② “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” 를
“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
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” 로 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항 중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 “다만 선임직 임원(이사, 감사)은
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”

③항 중 “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
선임하여야 한다.” 를 “선임직 이사,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후임
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.”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【사업】 이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<u>목적사업을 행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</u></p> <p>8. ~ 11. (생략)</p> <p>12. (신설)</p>	<p>제4조 【사업】 이 재단은 ----- -----<u>목적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</u></p> <p>8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환경컨설팅(환경관련 지식기반 환경 서비스 사업)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 【임원의 선임방법】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<u>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(추가)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⑥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감사는 시 환경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<u>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(추가)</p>	<p>제7조 【임원의 선임방법】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<u>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감사는 시 환경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<u>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 【임원의 결격사유】 (추가)</p> 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미성년자</u></p> <p>2. <u>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</p> <p>3. <u>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4. <u>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</p>	<p>제8조 【임원의 결격사유】 <u>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2. <u>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3. <u>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4. <u>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u></p>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5.(신설)</u></p> <p><u>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</u></p>	<p>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
<p>제9조 【임원의 임기】 ①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u>(추가)</u></p> <p><u>②(생략)</u></p> <p><u>③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u>(추가)</u></p>	<p>제9조 【임원의 임기】 ①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선임직 임원(이사, 감사)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선임직 이사,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.</p>

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

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이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을 제시함.

- 안산환경재단의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환경컨설팅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항에 대해 안산환경재단의 미래 가치 창출과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동의하나,
- 기존 추진중이던 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경기도 환경컨설팅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